

市場과 福祉서비스 - 市場體制에 대한 批判的 考察

曹 興 植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차 례 〉

- | | |
|------------------|---|
| I. 序 論 | IV. 福祉서비스에 대한 政府介入의
必要性 : 몇가지 哲學的 論爭 |
| II. 市場體制에 대한 옹호 | |
| III. 市場體制에 대한 비판 | V. 結 論 |

I. 序 論

福祉國家에 의한 市場體制外部 즉 政府의 福祉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하다. 찬성자들은 주로 첫째, 階級간의 경쟁의 결과든, 과잉착취된 인간의 資源들의 고갈의 결과든 간에 불균형이 되게 하는 고유한 資本主義 經濟秩序의 성향에 대한 대책으로서 福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며, 둘째, 社會體制的 요구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市民을 훈련하고 사회화시키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福祉서비스가 수행한다고 본다. 반면에 반대자들은 福祉서비스는 資源浪費的이고 經濟的 非效率을 조장하며 개인의 自由를 없애는 까닭에,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福祉서비스가 自由市場의 성공적인 작용을 방해한다고 본다.¹⁾

本稿의 관심은 이러한 양측면의 논쟁에 대한 이데올로기나 실제적인 分析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社會의 모든 資源들이 인간들의 福祉를 위해서 어떻게 分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써 市場體制를 통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福祉서비스에 대한 政府개입, 즉 社會政策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分配原理의 哲學的 分析을 제시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現實에 대한 명료화를 바탕으로 한 哲學的 分析을 통해서 적어도 批判的

態도를 견지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市場體制과 福祉서비스에 대한 찬반논쟁이나, 의견의 불일치, 특히 개념의 불일치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물론 이러한 哲學的 分析에는 어느 정도 보편타당한 命題를 미리 상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收去的 立場에서 하나씩 분석해가는 방법과, 불일치의 내용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共通의 場을 모색해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哲學的 分析은 첫째, 기존의 信念(beliefs)에 대한 批判的 評價와 둘째, 概念에 대한 명료화를 가져다 주게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지속적인 사려깊은 思考를 통해 불일치를 가져다 준 事實(facts)들을, 특히 社會關係의 本質과 條件 및 社會생활 자체의 제형태에 관한 문제들을 더 많이 발견함으로써 불일치되는 것을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²⁾

따라서 本稿는 上記한 후자의 立場에서 社會의 資源의 分配原理에 있어서 기존의 市場이 갖는 제반 事實들을 찾아내어 市場體制에 대한 찬반논쟁을 통해 감정적인 評價를 해봄으로써 福祉서비스에 대한 정부개입이 왜 요구되는지에 대한 當爲性을 살펴 보고자 하는데 주목적을 둔다.

물론 資源의 分배에 활용되는 통로나 방법으로는 전통적으로 많이 존재해 왔다. 경제적 市場體制, 家族이나 가정, 地域共同體나 이웃, 상호공제조합, 자선조직 및 교회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자선조직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통적인 방법들은 주로 地位(status)와 관련된다.³⁾ 그러므로 오늘날 산업사회에서의 福祉서비스는 전통적인 市場體制와 자발적인 私的部門(private sector)에 의한 資源 分배 방법과는 달리 새로이 등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엄격히 따져 오늘날 資源 分배의 方法으로 市場體制, 자발적인 私的部門, 정부에 의한 福祉서비스에 의한 方法의 셋으로 대별해 볼 수 있지만, 本稿의 관심은 市場體制와 정부에 의한 福祉서비스 둘로 나누어 資源의 分배원리에 대한 哲學的 分析을 하는데 한정됨을 밝혀둔다.

上記의 목적에 따라 本稿는 우선 기존의 經濟的 事實에 대한 분석을 통해 市場의 원리가 인간의 福祉를 향상시키는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는 여러 학자들, 특히 경제학에 있어서 主流를 이루어 온 新古典學派 經濟學者들⁴⁾과, 1960년대 후반부터 資本主義가 불안정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케인즈의 이론을 토대로 정부가 경기조정을 위해서 政策을 시행하는 것이 보편화되는데 대해서 理論과 政策의 양면에서 비판을 가한 시카고학파의 프리드만(M. Friedman) 및 개인의 주권을 중시하는 오스트리아학파의 미세스(L.V. Mises)의 영향을 받아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비판하는 하이에크(F. A. V. Hayek) 등 新保守主義者⁵⁾들의 주장의 내용을 살펴 보고, 둘째, 市場의 원리에 대한 批判的 考察, 즉 일반적으로 나

타나는 市場의 失敗(market failure)에 의한 市場體制의 단점 및 시장이 갖는 道德的 결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하며, 셋째, 이러한 시장체제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福祉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개입, 즉 社會政策의 필요성에 대한 몇가지 哲學的 論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市場體制에 대한 옹호

A. 스미드 이래 200여 년에 걸친 經濟分析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市場體制分析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主流를 점하여 왔을 뿐 아니라 연구성과도 이 영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資本主義 경제사회는 市場體制에 의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自由市場이 왜 바람직한가? 市場體制가 갖는 道德的 및 經濟的 우월성에 대한 광범위한 토의를 위해 新古典學派 경제학의 파레토 최적배분에 의한 복지경제 이론이 갖는 의의와 福祉서비스에 대한 정부 개입(社會政策)에 대한 批判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파레토 최적배분에 의한 복지경제 이론

自由市場體制가 경제적 복지의 증진에 유익하다는 것은 A. 스미드 등 古典經濟學者들에 의하여 옛날부터 주장되어 왔다. 市場體制가 경제복지의 증진에 유익함을 증명하려는 이론들이 그후 파레토(V. F. D. Pareto), 왈라스(M. E. L. Walras), 마아샬(A. Marshall), Hicks(J. R. Hicks) 등의 주류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점차로 발달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自由市場體制가 國民所得 및 效用의 증대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작용을 한 것은 1870년 대부터 발달한 限界分析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다. 현재 주어진 生産要素下에서 靜態的 狀態를 想定한다면, ① 그들의 生産要素가 가장 유효하게 사용되어져서 極大生産이 되며, ② 生産된 生産物(재화 및 용역)이 주어진 소득분배 상태하에서 소비자를 가장 만족시키는, 즉 效用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될 때, 경제는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파레토 최적」인데 이르기 위해서는 첫째로 각종 기업간(혹은 기업내부)에 있어서 각종 투입된 生産要素나 中間生産物의 배분을 가능한 방법에 의해서 다시 그이상 어떻게 再分配하여 바로 잡아도 어딘가 기업의 產出水準이 감소하는 상태에 도달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주어진 소득분배하에서 소비재(여가를 위시하여 그 소유자 자신에 의하여 소비되는 제 1차 생산요소를 포함)의 소비자에의 배분을 다시 그 이상 어떻

게 분배하여 바로 잡아도 어딘가 소비자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상태에 도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⁸⁾

이러한 파레토 최적배분에 의한 복지경제이론은 암암리에 차별적인 자원배분이 바람직하다는 가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價値判斷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첫째, 소위 사회나 국가의 복지나 어떤 특수한 집단이나 계급의 복지보다는 사회 속의 개개인들의 복지에 더 관심을 가진다. 둘째,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경제적 요인도 무시될 수 없다. 셋째, 개인이 가장 자신의 복지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消費者主權과 生産者主權이 존재한다. 넷째, 자원배분의 어떠한 변화도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감소시키지 않고 개인의 복지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변화는 사회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⁹⁾

이러한 차별적인 자원배분이 바람직하다는 가정은 資本主義社會의 경쟁질서는 결국 選擇의 自由에 기반을 두지 않을 수 없다는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稀少性에 의해 설명되는 모든 경제현상은 競爭關係에서 출발하며 경쟁의 원리는 자원배분의 낭비를 分權化된 방법으로 최소화시키는 기본원리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의 원리는 결국 交換效率性의 문제와 직결된다. 다시 말해 市場體制가 완전경쟁적이 될수록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된다는 가정은 不完全 競爭的 시장구조로 인한 복지손실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응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靜態的 균형상태에서 기여될 수 있는 효율적 배분의 성격과 動態的 경쟁이 주는 효율성 들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는 흔히 内部效率性 및 配分效率性(X-efficiency)으로 구분되지만 이것은 價格機構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이용될 뿐이다. 内部效率性은 시장경쟁에서 활동하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의미하며, 配分效率性은 특정 경제제도에 무관한 보편적인 개념으로, 한 경제의 부존자원과 생산기술 및 소비자들의 選好體系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때 配分效率性은 파레토 효율성을 의미한다.¹⁰⁾

후자는 주로 기술축적과 관련되는데, 이러한 기술축적에 의한 動態的 效率性의 개념은 정태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다른 개념이며 경쟁을 일종의 과정으로 파악할 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 슈페터에 의하면 資本主義的 시장경제의 발전을 동태적 경쟁의 創造的 파괴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잠정기간 동안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던 기업은 우수한 技術革新에 성공한 기업에 의해 도태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쟁은 상품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개발시장에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¹¹⁾ 이렇게 볼 때 경쟁에 의한 효율성의 논의는 전자의 경우 파레토 효율성에 의한 화폐를 중심으로 한 價格機構의 문제를 제기하여, 후자

의 경우는 무한정한 수요창출에 의한 끊임없는 기술개발의 문제를 갖게 된다.

아름다운 파레토 최적배분에 의한 복지경제이론의 기초는 合理的 經濟主體의 개별적인 利 益 추구가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서 잘 조정되어 調和로운 사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뢰 에 있다. 이러한 資本主義觀의 밑바탕에는, 사회는 의사표시가 자유로운 각 개인이 기능적 으로 얽혀져 있으므로 각 개인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를 산술적으로 합하면 경제의 운영원 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으며, 이때 각 개인은 富와 能力에 있어서 量的인 차이가 있을 뿐 그 행동양식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하겠 다.

2. 福利社會의 政府개입에 대한 批判

일반적으로 福利社會의 政府개입에 대한 新保守主義者들의 비판은 19세기 自由主義 의 복고와 고전경제학적 성격을 띠게 된다.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① 자원낭비적이고, ② 경제적 비효율을 조장하고, ③ 개인의 자유를 없애며, ④ 사회적인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 이다.¹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① 자원낭비라는 비판은 두 가지 가정하에 이루 어져 있다. 첫째, 福利社會에 대한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수요는 무한정하다 는 것이다. 福利社會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가수요를 조장하게 되는데 이 자 체가 바로 낭비적일 뿐 아니라 불충분한 자원으로 인하여 전체 수요를 해결하지 못할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관리하는 福利社會는 소외감을 낳게 하 고 이러한 소외감은 자존심의 훼손, 더욱 많은 지출의 요구, 개선가능한 자원의 낭비, 서 어비스의 질 저하 등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이다.

② 경제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즉 민간시장의 價格과 利潤 메카니즘이 經 濟成長의 가장 효율적인 보증인이라고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서어비스의 정부독점 은 비용과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없는 지출을 초래함으로써 비효율 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은 자원의 더욱 큰 활용을 의미하며 정부독점은 모든 計劃 의 결정을 여러 民間機關에 분담시키기보다는 독점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다.

③ 개인의 自由를 없애므로써 專制와 獨裁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民主主義下 에서 國家計劃은 자원의 불충분함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고 합법적인 價値에 대한 완전합 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自由市場의 장점으로서의 이러한 自由에 대한 논의 는 특히 個人主義와 관련하여 프리드만과 하이예크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가끔 自由와

個人主義는 상호교환 가능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며 중복되는 정도 있지만 여러 중요한 관점에서 볼 때 상이하다.

프리드만에 의하면 自由란 궁극적이며, 기본적이며, 변명 못할 가치로서 사회복지는 自由를 행사할 능력이 결핍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유일한 강요로서만 정당하다고 했다.¹¹⁾ H. 액톤(Acton)은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는 인간의 아이디어를 독점화하고 심지어 배급하기도 한다고 했다.¹²⁾ 그리고 하이예크에 의하면 自由란 他者에 의한 강제가 사회에서 가능한 한 감소되는 인간의 상태를 뜻하는데 이러한 自由의 개념에서 중심되는 아이디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自由는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끔 함으로써 긍정적인 개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計劃은 獨裁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獨裁는 강제와 理想의 강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서 만약 대규모 中央計劃이 가능하다면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된다”고 했다.¹³⁾

또한 自由를 옹호하는 가장 큰 근거로서 統治者들의 無知, 다시 말해서 統治者들의 必然的 無知(inevitable ignorance)에 입각해 있다.¹⁴⁾ 自由의 보완적인 것으로 하이예크는 個人主義란 고립되거나 자율적인 개인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사회조직의 原子임을 주장했다. 즉 自由에 대한 궁극적인 관심만을 둔 프리드만과는 달리 하이예크는 사회조직 속의 인간의 니드(need)면을 고려하면서 사회의 필수적인 不可知性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自由의 制度化로서 시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個人主義는 인간을 아주 理性的이고 理知的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매우 非合理的이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존재로서 보고 그 개인적 오류는 오직 사회과정을 거치는 동안 시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곧 개인들의 자발적인 제어망은 특정개인의 초과수요나 실행불가능한 계획 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사회의 不可知性에 기인하여 하이예크의 方法論的 個人主義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러한 方法論的 個人主義에 대한 견해가 갖는 장점과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장점으로는 현존하는 社會行爲者로서의 性向, 意圖, 態度 및 行動에 대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반면, 단점으로는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個人主義者에 대한 해석을 내포함으로써 國家, 危機, 階級 등의 개념을 거부한다는 것이다.¹⁶⁾ 그러므로 이러한 個人主義에 입각한 주장은 非個人的인 社會實體를 기초로 하는 集合主義에 대한 설명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된다.

④ 인간의 社會權을 인정해줌으로써 사회구조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니드가 권리로 되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널리 퍼져 있는 현대의 이단 중의 하나라고 특히,

E. 포웰(Powell)은 말한다.¹⁷⁾ 그것은 잠재적인 수혜자집단들 사이의 적대감과 불만을 무제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조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戰後國家, 특수하게는 福祉國家에 대한 新保守主義者들의 평가의 중심된 생각은 政府失敗(government failure)에 대한 생각이다. 形式主義, 또는 예기치 못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정부행동에 대한)가 바로 政府失敗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政府失敗(社會政策의 失敗)에 관해 그래저(N. Glaze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¹⁸⁾ 첫째, 고용자제를 처리하는 전통적 방식의 붕괴를 다루려고 시도하는 사회정책은 家族, 種族集團, 이웃, 敎會 등의 구조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결과 정부에 더 의존하게 되고 더 많은 사회정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해 고통을 처리하려는 우리의 노력 그 자체는 고통을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정책은 필연적으로 기대감을 형성한다. 사회정책의 약속은 부적절하게 실현될 때 높은 기대감만을 남겨 놓고 또다른 사회정책을 통해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기를 시도해야 하나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셋째, 사회정책 그 자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그리고 다룰 수 없는 요구를 창출한다. 왜냐하면 사회정책을 어떤 특수한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解決策으로 단순히 보는 것은 나쁘기 때문이다. 어떤 사회정책이고간에 力動的인 측면이 있어 그것은 문제를 확대하고 변화시키고, 혼돈, 불확실, 좌절과 같은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新保守主義者들에 의하면 政府失敗의 또다른 원인은 국가행동을 통해 공통의 이익을 꼭 같이 나누자는 集合主義者들의 순진한 생각에 있다는 것이다. 소위 공공 또는 일반적 이익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적 이익을 위한 가면이며 官僚的 合理性이라는 것이 시장의 합리성 못지 않게 非合理的이라는 것이다.¹⁹⁾

그러면 福祉서비스에 대한 新保守主義者들의 비판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자. 이들의 福祉國家觀은 社會事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한 근거로서 溫情主義와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의 認定으로부터 연유된다. 비록 이러한 정부개입의 원칙은 신축성이 있으나 이들은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 따라서 이들은 복지국가의 축소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²⁰⁾ 첫째, 이들은 福祉서비스의 범위, 즉 원조대상의 數와 地域의 축소를 원한다. 둘째, 福祉서비스 수준의 축소를 요구한다. 셋째, 行政管理方法의 변화, 즉 정부로부터 민간에게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게로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것은 補完的이고, 資産調査나 所得調査에 기초하여 있으며 地方수준에서 관리되는 복지국가의 개념이다. 經濟問題研究所(Institute of Economic Affairs)에서 나온 호바트(Ho-

bart)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T. 허친슨(Hutchinson)은 “보통 보고서는 價格과 시장에카니즘, 또는 경제권력을 활용시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도권의 분산, 選擇의 自由의 부활이나 확대, 그리고 구매자와 판매자,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選好를 부르짖는 기본철학에 기초하여 있다”²¹⁾ 고 쓰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전통적 自由市場의 부활을 강조하는 經濟問題研究所(IEA)의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부의 福祉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²²⁾ 첫째, 서비스는 無料로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영역에서 제공되는 保健과 敎育과 같은 영역까지 사용자가 料金を 지불해야 한다. 둘째, 보증인의 활용에 의해 選擇이 공공서비스에 주어져야 한다(예, 敎育). 셋째, 어느 곳에든 가능하다면, 국가공여는 사적 공여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넷째, 원하는 所得再分配는 무엇이든 物品給與가 아닌 現金移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은 이러한 비판의 경제적 분석은 앞서 얘기한 파레토 최적의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市場體制에 대한 비판

시장이 인간의 복지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거나 시장작용이 인간의 복지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부작용을 가져다 준다는 시장의 실패를 중심으로 한 市場體制 자체의 단점 및 시장의 도덕적 결함 등을 규정함으로써 市場體制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게 된다.

1. 市場體制의 短點

完全競爭을 토대로 하는 自由市場體制는 ① 이윤관계 및 수요,공급조건변화의 自動的 調整, ② 인간에 의한 人間統制의 배제, ③ 資源配分の 效率性 제고, ④ 不均衡의 自動的 矯正²³⁾ 등과 같은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인 市場機構는 완전한 市場體制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본질상 다음과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① 公共財의 생산 ② 外部經濟와 外部不經濟 ③ 自然獨占과 競爭의 제한 ④ 所得分配 ⑤ 경제의 不安全性 ⑥ 현재와 미래간의 效率的 資源配分 ⑦ 社會的 目標의 실현 등이 그것인데 이와 같은 市場機構의 단점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첫째는 시장기구가 전혀 그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위의 ①, ②)이고, 둘째는 기능을 발휘하더라도 잘 하지 못하는 것(위의 ③, ④, ⑤, ⑥)이며, 셋째는 기능을 잘 하더라도 社會的 目標와 배치되는 것을 하는 것(위의 ⑦)이다. 그리고 경제학자에 따라서는 ①, ②, ③, ④를 ‘市場의 缺陷’,

또는 ‘市場의 失敗’(market failure)라고도 한다.²⁴⁾

특히 이러한 시장의 실패란 價格機構에 의한 자원배분이 파레토 비효율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시장의 실패 원인은 크게 다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① 公共財 : 公共財의 수급을 시장기구에 맡기지 못하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들 수 있다.²⁵⁾ 첫째 限界費用에 따른 價格決定原理가 작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부의 일기예보를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시청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 한번 방송한 일기예보의 費用은 그 시청자가 얼마이든 차이가 없으므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시청하지 못하게 한다면 시청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의 만족감만 감소시킨다. 따라서 일기예보등의 公共財는 市場去來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無料로 제공하고 그 費用은 租稅收入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둘째, 保健, 쓰레기수거 서비스 등의 準公共財²⁶⁾의 경우 한 사람의 소비는 타인에게 外部效果를 초래하므로 시장기구에 일임할 수 없다. 教育과 같이 유익한 外部效果를 창출하는 公共財를 시장기구에 일임하면 그 소비량이 적게될 소지가 크다. 셋째, 生産의 不可分性(indivisibilities)이다. 전력, 수송 등의 公共財 생산 시설은 최소의 효율적 규모가 극히 크다. 따라서 생산을 상당히 증가시키더라도 單位當 생산비는 계속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限界費用에 의한 價格決定原理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면 생산자는 손해를 면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公共財의 생산은 시장기구에 일임할 수가 없다.

② 外部效果(external effects) ; 外部效果란 한 經濟單位의 행동이 다른 經濟單位의 생산비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는데 다른 經濟單位의 생산성이나 복지가 증가되면 外部經濟效果가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 外部不經濟效果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때 外部效果가 발생하는 이유는 市場價格에 그 기업이 발생시키는 公害에 대한 社會的 費用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市場의 실패의 한 예인 것이다.²⁷⁾

③ 自然獨占 : 어떤 기업의 限界生産費가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계속 체감하는 경우에 그 기업은 自然獨占이 된다. 이럴 때 그 기업제품의 시장가격을 한계생산비와 같게 하면 가격은 점점 하락하게 되므로 기업은 손해를 면할 수가 없다. 즉 시장기구의 價格決定原理가 작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는 제조업이나 公共서비스 생산에 모두 있을 수 있다. 公共서비스의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차가 한 대 더 통행하더라도 그 限界費用은 극히 적다. 그렇다고 차량통행의 限界費用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면 건설비를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것은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정부가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²⁸⁾

④ 次善論(second best theory) : 獨占, 生産물의 不可分性 또는 外部效果 등으로 인하여 파레토 최적조건의 한두 가지가 충족될 수 없는 경우, 나머지의 파레토 限界條件들이라도 충족시킴으로써 次善의 위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소위 次善의 一般理論(the general theory of second best)은 차선의 위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랑카스터-립시(K. Lancaster and R. G. Lipsey)의 次善의 一般理論에 따르면, “만약 파레토 최적을 위한 必要條件(즉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한 限界條件들)의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이상이 어떤 이유로 충족될 수 없다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나머지 限界條件들을 충족시킬 필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파레토 최적을 위한 한 가지의 限界條件이 달성되지 않을 때는 福祉極大化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머지 일부 限界條件들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다.²⁹⁾ 일반적으로 어떤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일부의 파레토의 最適條件들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次善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머지 最適條件들이라도 충족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랑카스터-립시의 次善의 一般理論에 따르면 하나의 파레토 최적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하나의 최적상태는 다른 모든 파레토 최적조건들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때만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하겠다.³⁰⁾

한편, II장에서 논의한 파레토 최적배분에 대한 4가지 가치판단과 관련하여 시장체제의 결함에 대한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³¹⁾

① 外來的 選好(exogeneous preferences)문제 : 개인의 選好가 반드시 시장체제에 의한 價格機構의 작동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② 相互依存的 效用性(interdependent utilities)문제 : 효용의 극대화는 자신의 효용의 극대화 보다는 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 모두의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③ 家族經濟 : 소비자주권의 논리는 주로 개인행동과 관련되는데 경제영역은 대부분 家族全體와 기업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保健, 敎育 등이 사적인 시장체제에 맡겨진다면 환자나 피교육자 등 당사자 보다는 부모 등에 의해 온정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다.

④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 소비자잉여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였을 때 그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主觀的 價値가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한 화폐의 主觀的 價値보다 큰 部分(差額)을 의미하는데, 특히 公供서비스가 주어지는 경우 限界費用價格으로 소비됨으로써 더 큰 소비자잉여를 창출하게 된다.

⑤ 移轉費用문제 : 사적시장체제에서의 이전에 드는 가격기구의 비용이 국가의 공여체제에서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⑥ 不確實性(uncertainty)문제 : 시장체제에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밖에는 하지 못한다.

⑦ 成長에 대한 限界 : 성장에 대한 한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측면은 그것이 근거하고 있는 理論의 위기이며, 다른 하나의 측면은 성장이 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문제들만이 아니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의 모순들의 출현이라는 현상이다. 특히 환경오염이라든가 환경과피의 문제는 成長政策의 반성을 촉구하는 절박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⑧ 現金去來에 대한 道德性문제 : 인간의 사랑, 性關係 등의 행위자체를 現金으로 매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티트머스(Titmuss)는 매혈행위에 대해 통렬히 비난했다.³²⁾

아름다운 시장에서 自由放任의 원리에 따라 경쟁을 하게 되면 公害를 비롯한 外部不經濟와 都市問題 등의 公共財의 부족, 독점의 성립, 所得의 不平等化 등 이른바 시장의 실패가 야기되며 동시에 소비자주권의 무력화와 인간소외현상도 증가됨으로써 시장체제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빚어진 역기능적 측면의 결과들을 시정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들의 모색들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특히 하버마스(Habermas)는 自由資本主義의 시장체제가 초래한 역기능적 결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交換이라는 근본적인 부르조아적 이데올로기는 몰락되었다고 하면서 ① 초국가적인 경제적 협력조직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② 비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정부의 소비(군비 및 공간산업), ③ 構造的 政策(자동적인 시장 때문에 결함이 생긴 부문에 대해 資本流動을 정책적으로 유도), ④ 物的 内部構造의 개선(관세정책, 주택정책, 직업훈련제도 등), ⑤ 非物的 内部構造의 개선(과학의 일반적 증진, 연구발전에 대한 투자), ⑥ 노동의 生産性 증대(직업학교의 신설, 훈련 및 재교육을 위한 계획제도), ⑦ 私的 생산에서 비롯된 사회적 결함 보완(비고용에 대한 보상, 복지서비스의 제공, 오염된 생태환경 복구) 등의 정부개입을 제시하고 있다.³³⁾

2. 市場의 道德的 결함

福祉서비스가 自由市場經濟의 몇 가지 도덕적 결함과 부적절성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시장의 도덕적 결함을 명백히 규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福祉서비스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굳이 시장이 도덕적으로 나쁜 제도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이 인간의 복지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거나 시장의

작동이 인간의 복지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 준다고 할 때 福祉서비스의 필요성은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의 도덕적 결함의 요체는 시장교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는 자유로운 經濟人의 合理的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自己利益(self-interest)을 근거로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시장경제가 갖는 自己利益의 속성은 A. 스미드의 '國富論'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國富論'은 分業論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社會的 分業을 초래하는 것은 인간의 交換性向이며, 이 交換性向의 원천은 自己利益이라는 것이다. 즉 사람은 이웃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으나 그 도움을 이웃의 仁愛에 기대해서만 얻을 수는 없고 이웃의 好意를 사서 그들의 自己利益을 충족시켜줌으로써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미드는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정작 사회의 이익을 증가시키려고 의도할 때 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가 많다. 나는 公共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에 종사한다고 하는 사람에 의해 실제로 公共의 이익이 크게 증진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³⁴⁾

사실 經濟交換의 각 당사자는 자신을 위해 획득을 극대화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 극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히 말해서 모든 인간의 경제관계를 自己利益이나 利己主義(egoism)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인식은 다른 사람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현실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³⁵⁾ 이런 점에서 P. 위크스워드(Wicksteed)는 "경제관계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내 마음 속으로부터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포함한다. 따라서 경제관계의 특수한 성격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非人間主義(non-tuism)이다" ³⁶⁾ 라고 하면서 경제관계를 自己利益으로 보지 않고 非人間主義로 간주했다. 이것은 결국 인간들에게는 많은 또다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면 구체적인 시장의 부적절함과 도덕적 결함은 무엇인가? 우선 利益(interest)이 갖는 의미부터 살펴보자. 利益에는 심리적, 혹은 기술적 의미와 주범적 의미,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이것은 사람이 실제로 갖길 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의 경우 이것은 실제로 사람이 갖길 원하든, 원치 않든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쾌락적인 스미드의 기본틀은 인간의 진정한 利益은 바로 자신의 欲望(want)충족에 둠으로써 위의 두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이 점이 바로 自由市場經濟에 대한 타당성있는 비판의 소지가 되는데, 즉 시장은 기본적인 니드충족(규범적 의미에서의 利益)으로부터 니드와는 관련없는 욕망충족(심리학적 의미)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점

차 재화에 대한 무절제한 願望(desire)에서부터 나왔고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쾌락적인 소비자 이상으로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스미드는 이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현대 신고전학과 경제학은 이 점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시장의 두번째 도덕적 결함은 시장이 競爭的인 한 不平等한 만족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시장은 두가지 점에서 경쟁적이다. 즉 소비자는 자신의 사적 획득의 극대화를 위하여 생산자나 중간상인과 경쟁하게 되고, 생산자나 중간상인은 市場占有를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된다. 심지어 法的 秩序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경쟁은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성공하게 하고, 이러한 성공은 자녀들에게까지 물려 주게 되는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市場메카니즘은 모든 인간의 복지와는 동떨어진 社會的 不平等을 초래케 함으로써 도덕적 결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도 시장체제가 갖는 부적절성은 共同體와 共同體의 利益에 대해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는다는데에 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라든가 환경과피를 주내용으로 하는 公害問題는 20세기 후반에 있어서 世界的 혹은 地球的 現象이며, 이것은 인간활동의 질과 규모가 격변하고 확대된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데에 있어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共同體의 이익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네째, 시장의 결함은 인간간의 심리적 상호의존관계나 정당한 이해관계의 대립 및 共同體精神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장체제에서의 개인과 개인의 접촉은 오직 交換過程만을 통해서 非個人的 혹은 非人間的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가치관은 경제행위에 있어서의 合理性의 원칙에 대한 本能的인 자각을 배제하면 主觀的인 관점에 의해서만 상호교립적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경제사회에 있어서는 공통된 가치관의 형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간의 이해관계의 대립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시점의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의 경제행위는 일정한 歷史的 產物로서 존재하는 특정한 사회의 制度的 與件下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經濟主體가 갖고 있는 主觀的 價値基準이라는 것도 그 자신이 처해있는 특정한 經濟社會的 環境과 그들이 수행하는 경제적 기능에 크게 의존한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에 있어서도 사회구성원간에는 경제행위의 成果配分에 따른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것들은 공통된 利害關係를 갖는 집단과 집단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개개인의 가치관 간에는 하등의 상호의존관계나 대립관계 및 공동체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社會的 選擇의 문제를

추상적이며 형식논리적으로 定型化해서 그 논리적인 성질만을 고찰할 뿐 歷史的, 制度的 要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福祉서비스에 대한 政府介入의 必要性 : 몇가지 哲學的 論爭

시장체제가 갖는 시장실패의 내용과 도덕적 결함의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福祉서비스에 대한 정부개입, 즉 社會政策의 필요성에 대한 哲學的 分析의 기본적인 요소로 몇 가지가 대두된다. 대체로 自由(freedom)문제, 選擇(choice)문제, 所得分配문제, 欲望(want)과 니드문제 등이 그것인데, 이제부터 이에 대해 차례대로 哲學的 論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自由문제

新保守主義者들은 시장체제내의 自由交換과 關係해서 私的 自由를 규정한다. 시장은 공급으로 나타나는 생산의 제요소와 소비로 나타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개인들로 하여금 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사적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유일한 체제임을 강조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최근에 파레토 최적배분의 전통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는 파레토류의 분석은 介入主義者의 입장에서 쉽게 활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 로울리(Rowley)는 자유주의 복지경제학은 파레토류에서 탈출해야 하며 궁극적 목적으로서 效率性을 위한 완전한 自由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⁰⁾ 따라서 시장의 입장에 대한 自由主義 요소가 전통적인 效率性의 입장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私的 自由에 대한 정의로서는 협소하다. 왜냐하면 國家權力에 대한 관심을 고도로 선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만 끌고 가기 때문이다. 敎育과 保健에 대한 국가대책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하는 반면 더욱 확실한 강제적인 국가활동부분(국방, 법, 질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개념은 부정적 자유의 개념인데, 공공개입에 의해 증가될 수 있는 긍정적 자유(건강, 교육, 주택문제에 있어서 박탈당한 자들을 위한 기회의 확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다.⁴¹⁾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자유에 대한 신념은 하나의 필연적 결과로서 平等과 關係해서만 의미가 있는데, 만약 資源 또는 權力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R. 토우니(Tawney)는 자유의 근본이념이란 자기 자신의 生活條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것은 平等을 의미한다—이라고 하였다.⁴²⁾

또한 自由란 정부의 활동에 의해서 더욱 신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法과 經濟政策, 社會政策, 財政政策 등을 통한 정부활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自由는 재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두세대 동안에 정상적인 남녀의 자유는 증가되었다. 그것은 정부가 아무활동을 하지 않은 것 보다는 정부활동 때문이었다…… 자유의 산파역할은 사실상 法이 담당하여 왔다”라고 토우니는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활동은 특히 지배자나 고용주의 非競爭的인 행동을 억누르려는데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체제는 지배자나 고용주의 自由에 더 충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自由의 문제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個人主義와 집단전체의 이익을 위해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集團主義와 관련되는데, 전자의 경우,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유로와야 한다는데 있으며 한편으로는 개인의 욕망과 창의성을 높이 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규범에의 동조를 강요하는 모순된 맥락을 지닌 복합된 신조이다. 따라서 개인주의는 자기 이익을 근거로 하는 自助, 사적 사유, 경쟁 및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성취를 강조한다. 집합주의 경우는 自助보다는 利他心, 사적 자유보다는 共同體의 善, 경쟁보다는 협동,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성취보다는 사회적이고 공동적인 측면에서의 성취를 요구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개개인의 出世의 이념으로부터 奉仕의 이념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 選擇문제

1) 選擇의 범위

개인이 選擇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原因(cause)과 選擇의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이다. 어떤 사건의 원인을 알게 된 결과에 대한 진술은 그 사건이 表明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달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행동은 예측될 수 있다는 의미로 행동이 因果的임을 보여 준다고 해서 항상 행동이 必然的임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거나 거절할 수 있을 때라야 나는 비로소 무엇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選擇할 수 있는 對案들이 없다면 우리들은 행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對案들의 존재가 選擇의 한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選擇하는 그 자체는 우리들의 인식, 즉 행동에 대한 가능한 因果的 說明에 대한 인식,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인식,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 자신이 갖는 인식, 주위세계의 중요한 양상들에 대한 인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強制나 操作, 그리고 기존의 知識에 의

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選擇하는데로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이다.⁴⁵⁾ 첫째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공개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여러 대안들의 범위에 대한 인식과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셋째, 외적인 구속이나 억압이 없어야 한다.

2) 選擇과 市場體制

시장기구가 사적 자유 및 選擇과 관련된다면 시장의 조건은 選擇의 조건과 조화된다고 할 수 있다. 피상적으로 자유시장은 범위나 인식의 조건 및 억압의 탈피를 만족시켜 주는 것처럼 보인다. K. 저지(Judge)가 지적했듯이, 가격메카니즘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의사 결정자에게 자신의 選擇表示에 의한 자원할당에 참여토록 하는 多數制選舉의 투표행위의 한 형태이다.⁴⁶⁾ 동시에 도처에 있는 公開 캠페인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본래의 자신보다 더 잘 치장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호화스럽고 만족스럽도록 유도시킴으로써 選擇의 범위에 관한 情報를 끊임없이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의 한 면만 나타내 보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選擇은 생산자의 選擇에 대한 반대급부를 반드시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⁴⁷⁾ 다양한 영역의 選擇을 제공하는 것이 생산자가 갖는 최선의 관심은 아니고 한정된 범위내에서 선택된 욕망충족을 시키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가능하면 언제든지 독점이나 과점이 생기게 된다. 시장은 단지 생산자의 利益을 위해서 그들의 의도대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敎育을 담당한다. 소비자는 생산자의 횡포에 대해 방어할 길이 없다. 최근의 消費者保護團體나 감시기구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보수주의자들은 시장이 자원할당의 가장 效率的인 手段이고 또한 민주주의의 필수부분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經濟的 善으로서의 選擇을 民主主義의 자유로운 활동의 公開的 證標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이 效率的인 資源割當者라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은 제쳐두고라도 시장이 效率的인 選擇割當者라는 데에 대해서는 확실히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록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선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시장기구가 똑같은 정도로 분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⁴⁸⁾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不平等을 초래하는데, 더구나 남의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선택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기회는 共同體에서 드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市場體制 옹호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문할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技術

知能, 資質 등에 있어서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은 당연히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므로 이들 수준에 맞도록 선택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선택을 주기 위하여 일부러 인간이 불평등하게 취급될 體制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選擇과 福祉서비스

福祉서비스는 니드의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니드가 개인에게 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규제적 메카니즘은 논리적으로 니드의 분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疾病과 健康은 필요에 대한 필요조건임과 동시에 충분조건이기 때문에 의료보호의 분배는 질병과 건강의 분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은 이러한 분배를 향상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선택이 없기 때문이다. 健康念慮病은 예외로 치고 치료를 받고 싶어서 병에 걸리려는 사람은 없으며 따라서 병에 걸리는 것이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과 건강이 치료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으로만 작용된다면 니드의 개념도 시장에 등장된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병원 문앞에도 가지 못하는 현상이 속출하게 된다. 의사들은 소비자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시장체제 옹호론자들은 이에 대한 해결로 現金再分配, 즉 賃의 所得稅나 現金保證制 등의 형태로 극복하려고 한다. 하지만 現金移轉을 통한 어떠한 분배체제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니드의 해결을 위한 手段으로서 平等에 접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⁵¹⁾ 첫째, 이론적으로 볼 때 인공적인 규제가 개인의 자격이나 개별적 지출에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각 개인은 그가 원했던 급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低所得階層은 시장에서 가장 힘이 약한 입찰자가 될 것이며, 둘째, 실제로 現金給與와 니드간에는 반비례현상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는 많은 소외계층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사회적 맥락 속에서 社會構造的 屬性에 기인한 경우들이 많으며 불평등은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가중되고 심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빈곤은 질병과 관련되며, 교육적 성취는 생활조건들과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선택을 통한 니드의 해결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요구된다고 하겠다.⁵²⁾ 첫째, 富를 토대로 한 서비스에 대한 사전 배제가 없어야 하며, 둘째, 선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셋째, 급부를 위한 手段들이 재화에 대해 無料로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선택에 대한 가능한 인식과 선택에 의한 효력을 제한시키는 실질적인 社會環境에 대한 고려없이 선택을 위한 필수조건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하겠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3. 所得分配문제 : 效率과 衡平 및 正義

시장체제는 效率性和 관련되어 있지 衡平和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公共效用에 대한 限界費用 價格政策을 생각할 때 효율적인 자원할당이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목적이고, 형평은 부수적으로 취급된다.

전통적인 형평의 구분은 水平的 衡平으로서 平等에 대한 동등적 처우와 垂直的 衡平으로서 不平等에 대한 차등적 처우로 나눌 수 있는데 문제는 후자의 경우이다.⁵¹⁾ 新古典派는 신후생경제학의 입장에 따라서 所得分配의 문제와 資源配分의 문제를 분리해서 후자만을 경제학의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시장기구의 기능을 資源配分에 있어서의 效率性的의 기준만에 의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 所得分配에 있어서의 公正性, 平等性的의 기준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신고전파의 주장은 최근에 K. 애로우(Arrow)의 社會的 選擇의 이론에 의해서 확고한 이론적 근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각 개인의 가치를 집계해서 사회적 가치를 구하는 과정이 논리적인 齊合性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의 가치관이 어떠한 특정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되든가 혹은 어떠한 편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民主主義 사회에는 논리적인 제합성을 갖는 社會的 選擇의 과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소위 不可能定理가 도출된다.⁵²⁾ 이것이 뜻하는 바는 결국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공정성, 평등성에 관한 판단은 主觀的이며 相對的이라고 하는 신후생경제학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비록 경제학이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공정성, 평등성의 문제를 회피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포기하고 있더라도 현실사회에서는 이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공정성, 평등성의 문제에 대한 일정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예를 들면 現代民主主義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구성원은 건강하게 최저한의 文化生活을 영위할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만약 시장기구가 이러한 사회구성원의 니드를 공정, 평등하게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福祉서비스)에 의해서 그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니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사회내의 갈등과 긴장이 야기되어 사회의 존립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J. 로빈슨(Robinson)의 경제학의 제2 위기는 바로 이러한 신고전파의 경제학에 있어서의 소득분배문제의 추방현상 혹은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공정성, 평등성의 기준의 배제현상을 말한다.⁵³⁾

그리고 시장이 生活基準을 결정짓는 가장 效率的인 수단이라는 신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첫째, 국가공여는 낭비적이며, 관료적이고 남용되기가 쉽다.

들제, 개인이 자신의 복지를 잘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체제 옹호론자들은 衣食住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物品보다 現金移轉의 수단을 더 요구하게 되며 최상의 개인선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시장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없든간에 개인은 사적인 선택의 행사에 따라 자신의 복지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심지어 최저생계수준 이상으로 모든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현금급여 조차도 生活機會의 잘못된 분배나 니드와 관련된 物質的, 社會的, 文化的 環境에서의 결핍을 시정해 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효율과 형평의 상반관계를 고려해 보면 결국 社會正義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은 자원할당이 사회의 어느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가져오도록 하는 福祉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개입, 즉 社會政策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⁵⁴⁾

4. 欲望(want)과 니드(need)문제

시장체제 옹호론자들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의 충족을 기반으로 하는(앞에서 논의된 시장의 도덕적 결함의 전제가 된 自己利益의 끊임없는 추구는 바로 욕망충족으로 나타난다) 效用極大化 이론은 경제행위의 手段과 目的—소비와 소득—이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다는 허구에서 출발한다. 인간행동의 문제를 순전히 형식적으로만 고찰함으로써 무엇을 극대화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문제가 회피된다. 다시 말하면 경제행동에 관한 현대의 시장체제 이론은 선택능력을 가진 자의 욕망추구에만 언급함으로써 기술시대에 있어서의 인간의 생존달성과 생명유지에 요구되는 자율성이라는 기본적 니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수많은 인간의 社會적 生活環境의 질을 악화시키는 무거운 짐, 위기, 실업 그리고 빈곤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성의 상실이나 인간소외현상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시도는 현재의 구체적 문제에서 출발하여 현실에서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설정을 특히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서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한 기준 및 비교적 일정한 지표를 특히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은 기준은 특이하고 상이한 世界觀과 文化의 彼岸에 존재한다. 이러한 지표는 인간의 生存과 自律性에 대한 기본적인 니드의 형태로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최저기준은 현실의 生活條件에 관한 필요한 情報과 인간의 生命維持에 관한 객관적인 전제를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효용의 정규적인 기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화폐의 척도와는 다르며 인간생활의 직접적인 기준이다.

사실 경제학자들은 주관적 효용의 객관적인 측정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주관적 감각으로서의(즉 個人과 稀少財간의 관계로서의) 효용은

개인간 그리고 다른 시점간의 효용을 측정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모순을 전적으로 도외시한다 하더라도 통일적인 측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無差別曲線을 사용하여 두 재화간의 효용을 비교하는 방법은 효용측정이 아니고, 주어진 소득, 주어진 선호에 있어서는 개인은 두 재화의 일정한 적지움을 같은 가치로 간주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효용측정이라는 문제는 오늘날까지 전혀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⁵⁵⁾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형식적인 合理性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정확성이 의심되는 측정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도 확고한 인간적인 기반, 즉 인간의 생존과 자율성에 대한 기본적인 니드를 과학적 논의의 중심 및 결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해도 니드에 대해서 누가 이를 판단하며 그것의 범위는 어떠한가, 이에 대해 어떤 자원들이 주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니드가 다른 니드에 비해서 중요한가에 관해서는 완전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는 남는다.⁵⁶⁾ 하지만 적어도 상당수의 사회과학자나 인간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니드의 내용과 심지어 서열위계마저도 과학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짙어지고 있다. 경제학자들도 이른바 기본적 니드(basic needs)의 개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요즘의 실정이다.⁵⁷⁾

사실 니드는 취급하기가 곤란한 개념이지만 앞서 밝혔듯이 이것에 대해 거부할만한 정당성은 없다. 마찬가지로 생존과 자율성을 근거로 하는 기본적 니드에 의거하여 국가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재화가 반드시 市場價格과 私的給與로 돌려져야 한다는 가정에도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니드의 개념은 시장체제에서 제외된 經濟活動部門에서의 자원할당에 대한 대안적인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欲望을 근거로 하는 근본적인 시장체제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고 하겠다.

V. 結 論

社會資源의 分配原理에 있어서 市場體制의 원리와 福祉서비스의 원리에 대한 哲學的 分析에 의한 찬반논쟁을 해봄으로써 福祉서비스에 대한 정부개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當爲性을 살펴 보고자 한것이 本稿의 目的이었다.

市場體制는 古典的 自由人의 가치인 自己利益을 전제로 自由, 個人主義, 不平等한 競爭原理, 自助 및 效率性에 입각한 個人的 成就의 가치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가치발전을 계속 조장한다. 반면에 福祉서비스는 共同體利益을 전제로 共同體의 善, 協同, 利他

心, 衡平에 의한 社會正義 및 人本主義를 바탕으로 한 共同的 成就의 가치발전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때 시장체제와 福祉서비스간의 가치갈등은 經濟的 目標과 社會的 目標간의 갈등과 함께 자본주의사회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갈등을 파악하는 것이 福祉서비스의 당위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것에 대한 哲學的 分析이 바로 첫 걸음이 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福祉서비스가 자원배분 및 生活機會의 배분에 있어서 시장체제보다 상대적으로 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社會的 目標가 經濟的 目標보다 열등적으로 취급되어 온 게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福祉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사회적인 문제가 경제체제에 의해 규정됨으로써 福祉서비스의 주기능이 주로 經濟的 가치의 정당화에 기여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貧者의 경제정책'이나 무능력자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티트머스가 표현한 '公的인 부담'(public burden)으로 밖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개인의 私的 利益을 추구하는 시장체제의 원리로서 모든 사회자원의 배분이 인간들의 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가능한가 할 때 자원배분의 效率性은 달성될지라도 로빈슨이 얘기했듯이 경제학의 제 2위기인 소득분배의 정당성과 평등성에 있어서는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地球村이라는 人類共同體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自己利益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시장체제의 원리만으로는 인간의 복지를 위해 충분한 자원배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자원배분에 있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내재된 본질적인 문제인 시장의 원리와 福祉서비스의 원리간의 갈등은 결국 이들의 조화를 요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시장의 원리가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만 시장의 원리로서 되지 않는 부분이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사회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들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화는 사회가 지향하는 價值基準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설정은 理論的 體系로 정립될 수 있지만 그 기준과 정책방향의 설정은 社會的 選擇의 결과, 즉 국민들의 政治的 過程의 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덜 발전된 국가일수록 福祉서비스의 원리가 시장체제의 원리에 의해 무시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社會的 選擇에 있어서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기본적 니드의 존재를 무시한 채 개인적 效用의 극대화를 위한 불평등한 競爭원리에 입각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선택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選擇可能性이 없다는 구실로 어떤 유착된 政治經濟階層의 利害關係에만 몰두하여 기준을 설정해서도 안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날의 政治經濟史는 시장체제이든 福祉서비스이든간에 모두 힘있는 자의 자

已合理化 수단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계층간의 힘의 논리가 어떻게 사회를 지배해 왔으며, 社會科學, 특히 경제학이 이를 위하여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哲學的 論爭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이다. 비록 이러한 哲學的 分析이 어떤 정확한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해답 조차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보다는 더욱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지대하다고 하겠다.

*** 註 ***

- 1) Peter Taylor-Gooby, "Markets, Needs and Welfare", in Raymond Plant, Harry Lesser and Peter Taylor-Gooby, *Political Philosophy and Social Welfare*,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80, p. 173
- 2) 사회정책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David Watson, "Making Reality Intelligible: the Relation Between Philosophical Analysis and the Study of Social Policies",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12, No. 4, 1983, pp. 491~514를 참조할 것.
- 3) Anthony Forder, *Concepts in Social Administration*,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78, p. 58
- 4) 主流경제학은 A. 스미드, D. 리카도, J. S. 밀 등의 古典學派경제학, W. S. 제본즈, K. 멩거, L. 왈라스, A. 마샬 등 1870년대 초 '限界革命' 이후의 新古典學派 경제학, J.M. 케인즈, J.R. 히스, P.A. 사부엘슨 등 케인즈의 '一般理論' 이후의 新古典學派綜合으로 이어져 왔는데, 경제학이 학원에서 자리잡게 된 이후에는 신고전학과 그 중에서도 왈라스의 전통이 강력하게 지속되었으며, 다양한 견해들이 신고전학과 의 이론체계에 흡수되면서 현재의 主流경제학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의 主流와 非主流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글을 참고할 것. 邊衡尹, "經濟學에 있어서의 主流와 非主流", 現代經濟學研究, 汎潮社, 1985, pp. 11~35.
- 5) 1970년대 이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市場과 個人主義라는 고전적 원리에 대한 신념을 기반으로 한 신보수주의운동이 등장한 바, 이들의 주장에는 A. 스미드의 경제학과 스펜서의 사회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個人主義와 自由放任主義의 고전적 원리에 대한 지속성과 함께 2차대전 이후 20여년간의 福祉國家의 경험에 관련된 새로운 주

- 장도 상당한 부분을 짐하고 있다. Ramesh Mishra, *The Welfare State in Crisis*, Wheatsheaf Books Ltd, 1984, pp. 26 ~ 27
- 6) 丸尾直美, 福祉國家의 話, 日本經濟新聞社, 11版, 1979, 禹在賢 編譯, 福祉國家論, 經進社, 1982, pp. 65 ~ 66에서 재인용함.
- 7) David Heald, "The Rehabilitation of the Market in Social policy", in Noel Timms(ed.), *Social Welfare : Why and How*,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80, pp. 64 ~ 65
- 8) 尹暢皓, 李奎億, 産業組織論, 法文社, 1985, p. 44
- 9) 前掲書, pp. 62 ~ 63
- 10) Vic George, Paul Wilding, *Ideology and Social Welfare*, Roulledge & Kegan Paul, 1976, chp. 2를 참조
- 11) M.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pp. 12 ~ 33
- 12) H. B. Acton, *The Morals of Markets*, Longman, London, 1971, p. 101
- 13) F. A. Hayek, *The Road to Serfdom*,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p. 53
- 14) Norman Furniss, Timothy Tilton, *The Case for the Welfare State*, Indiana University Press, 1977, pp. 54 ~ 56
- 1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F. A. Hayek,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I : Rules and Order*, Routledge & Kegan Paul, 1973을 참고할 것.
- 16) Peter Taylor-Gooby, *op. cit.*, p. 190
- 17) E. Powell, *Skill to Decide*, Elliot Right Way Books, 1972, p. 12
- 18) Nathan Glazer, "The Limits of Social Policy", in Weinberger(ed.) *Perspectives on Social Welfare*, Macmillan, New York, 1974, pp. 256 ~ 257
- 19) Ramesh Mishra, *op. cit.*, pp. 34 ~ 35
- 20) Vic George and Paul Wilding, *op. cit.*, chp. 2를 참고할 것.
- 21) T. W. Hutchinson, *Half a Century of Hobarts*,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70, p. 10
- 22) David Heald, *op. cit.*, p. 59
- 23) 宋丙洛, 韓國經濟論, 博英社, 1985, pp. 84 ~ 86
- 24) 前掲書, p. 87

- 25) 前掲書, pp. 358 ~ 359
- 26) 재화와 용역은 공공성(publicness)을 기준으로 할 때 공공성이 가장 높은 純粹公共財(국방, 도로, 일기예보 등), 거의 없는 私有財(private goods), 그리고 중간형인 準公共財(교육, 의로서어비스 등)의 셋으로 분류되는데 公共財의 일반적인 특성은 ① 소비의 非競合性 ② 소비의 非排除性(non-excludability) ③ 집단적 의사결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準公共財는 다음의 2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① 소비의 外部經濟창출 ② 應分の 욕망(merit want)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초의무교육이나 기본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응분의 기본욕망에 대한 범위와 정도는 경제학에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27) David Heald, *op. cit.*, pp. 68 ~ 69
- 28) 前掲書, pp. 88 ~ 89
- 29) Kelvin Lancaster and R.G. Lipsey, "The General Theory of Second Best",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24, 1956 ~ 1957, pp. 11 ~ 32
- 30) 朴洪立, 經濟學原論, 博英社, 1985, p. 273
- 31) David Heald, *op. cit.*, pp. 73 ~ 83
- 32) R. M. Titmuss, *The Gift Relationship*, George Allen & Unwin, London, 1970
을 참고할 것.
- 33) Jürgen Habermas, *Legitimation Crisis*, trans. by T. McCarthy, Beacon Press, Boston, 1975, p. 35
- 34) Adam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p. 477
- 35) R. S. Downie, "The Market and Welfare Services : Remedial Values", in Noel Timms(ed.), *op. cit.*, p. 43
- 36) P. H. Wicksteed and L. Robbins, *The Commonsense of Political Econom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33, p. 180
- 37) R. S. Downie, *op. cit.*, pp. 44 ~ 45
- 38) *Ibid.*, p. 45
- 39) *Ibid.*, pp. 45 ~ 46
- 40) C. K. Rowley, "Liberalism and Collective Choice : a Return to Reality ?", *Manchester School*, vol. 67, 1978, p. 248

- 41) David Heald, *op. cit.*, p. 84
- 42) J. M. Winter and D. M. Joslin, *R. H. Tawney's Commonplace Boo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p. 22
- 43) R. H. Tawney, *The Radical Tradition*, Penguin, 1964, p. 160
- 44) Alf Davey, "Choice, Markets and Welfare", in Noel Timms(ed.), *op. cit.*, pp. 94 ~ 95
- 45) *Ibid.* pp. 95 ~ 96
- 46) K. Judge, *Rationing Social Services*, Heinemann, London, 1978, p. 31
- 47) Alf Davey, *op. cit.*, p. 96
- 48) *Ibid.*, p. 97
- 49) *Ibid.*, p. 99
- 50) *Ibid.*, pp. 100 ~ 101
- 51) David Heald, *op. cit.*, pp. 86 ~ 87
- 5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 J. Arrow,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2nd ed., Yale University Press, 1963을 참고할 것.
- 53) J. 로빈슨에 의하면 케인즈혁명의 역사적인 진행과정은 경제학의 제 1의 위기의 연장으로서 제 2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제 2의 위기는 바로 새로운 신고전파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기준만을 채택하고 소수분배에 있어서의 공정성, 평등성의 기준을 배제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R. Robinson,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No. 5, 1972 : 兪仁浩 編譯, "경제학 제 2의 위기", 現代經濟學의 위기, 한길사, 1984, pp. 25 ~ 44를 참고할 것.
- 54) D. 왓슨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소외를 필연적으로 야기시키는 경제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가져다 주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고 역설했다. David Watson, *Caring for Strangers*,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80, pp. 22 ~ 30을 참고로 할 것.
- 55) K. W. Kapp, *Environmental Disruption and Social Costs*(1975) : 兪仁浩 編譯, "現代經濟學 批判", 前掲書, p. 117
- 56) 브레드쇼우(Bradshaw)의 경우 사회 니드를 네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①전문가에 의해 규정되는 규범적 니드(normative need) ② 개인이나 잠재적인 소비자의 욕망(wa-

nt)을 의미하는 인식된 니드(felt need) ③ 개인이나 잠정적인 소비자에 의한 서어비스 적용과 관련되는 표현된 니드(expressed need) ④ 비슷한 속성을 가진 개인들과 관련되어 규정되는 비교적인 니드(comparative need). 이중에서도 기본적 니드와 가장 관계되는 것은 표현된 니드이다. J. Bradshaw, "The Concept of Social Need", *New Society*, No. 496, pp. 640 ~ 643

57) 그 한 보기로, Hans Singer, *Technologies and Basic Needs*, International Labor Office, Geneva, 1977 참조 : 金環東, "경제성장의 사회적 대가", *경제성장과 사회변동*, 한울, 1984, p. 38